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4·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
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강도형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(이하 「세월호 피해지원법」이라 한다)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기간 연장('24. 4. 15. → '29. 4. 15.)에 관한 법률이 개정(법률 제20428호, 2024. 6. 4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존 지급기간('24. 4. 15.)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, 같은 법 제35조의 안산트라우마센터 관련 사업 수행 내용 및 위탁운영 주체를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4·16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기간 삭제(안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)

- 1) 「세월호피해지원법」 제23조제3항 개정('24. 6. 4. 시행)으로 4·16 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질병 등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이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연장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기존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인 2024년 4월 15일 부분을 삭제함.

2) 「세월호피해지원법」 제25조제2항 개정('24. 6. 4. 시행)으로 4·16 세월호참사로 인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·치료 비용 지급기간이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연장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기존 검사·치료 비용의 지급기간인 2024년 4월 15일 부분을 삭제함.

나. 안산트라우마센터 사업 수행 내용 추가(안 제31조제2항제2호)

4·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 지원 등에 한정하던 사업수행 범위를 관련 신체질환 검사·진료 및 트라우마 조사·연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함.

다.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위탁 주체로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 추가
(안 제31조제4항)

「세월호피해지원법」 제35조제2항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는 ‘국가 등’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)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서는 센터 운영을 정신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주체로 ‘국가’만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무조정실, 보건복지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“비용(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)”을 “비용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3항 본문 중 “비용(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)”을 “비용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2항제2호 중 “증상 및 정신질환”을 “증상, 정신질환 및 신체질환”으로, “검사”를 “검사·진료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조사·연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가는”을 “국가등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기간)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(이하 “의료지원금”이라 한다)은 4·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·정신적 질병,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,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<u>비용(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)</u> 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질병·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.	제19조(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기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비용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·치료) ①·② (생략)	제21조(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·치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검사·치료를 받은 경우 그 <u>비용(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</u>	③ ----- ----- ----- <u>비용</u> ----- -----

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에 해당 정신질환 등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배상금이 산정·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제31조(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) ① (생략) ② 안산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(생략) 2. 피해자 등의 심리적 <u>증상 및 정신질환</u> 등에 대한 <u>검사</u> 3. ~ 6. (생략) ③ (생략) ④ <u>국가</u>는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	제31조(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증상, 정신 질환 및 신체질환</u> ----- ----- <u>검사·진료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조사·연구</u>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국가등은</u>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0 - 6264